



일본의 무역원활화 정책

AEO제도와 통관상 혜택

2017년 7월

주일본관세관



목 차

1

한일 경제 비교

2

일본의 AEO제도 개요

3

AEO 사업자별 혜택

4

AEO 상호승인 현황



1

한일 경제 비교

2

일본의 AEO제도 개요

3

AEO 사업자별 혜택

4

AEO 상호승인 현황

(1) 주요 통계로 본 한일 비교



※ 총인구·명목GDP·총교역액은 2016년 기준,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기준

(2) 한일 경제 격차 추세

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격차는 축소 추세

한일간 GDP 규모 격차



한일간 1인당 GNI 수준 격차



(3) 교역 및 수출

▶ 일본의 전체 교역 및 수출 규모는 각각 한국의 1.4배, 1.3배 수준이며, GDP 대비 교역규모는 한국이 70%, 일본은 30% 수준

한국과 일본의 전체 교역액 추이(2000~2016)



주요국 교역규모 현황(2015년 기준)

	한국	일본	중국	미국	독일	영국*
GDP대비교역규모(%)	69.9	30.9	36.5	21.3	70.9	38.2
수출(%)	38.2	15.2	21.0	8.4	39.5	16.0
수입(%)	31.7	15.7	15.5	12.9	31.4	22.2
총교역액(억불)	9,633	12,734	39,569	38,129	23,795	10,863
수출(억불)	5,268(6위)	6,249(4위)	22,749	15,049	13,295	4,604

(4) 세계 1위 품목

◆ 닛케이신문, 2016년 세계 “주요 상품·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” (2017.6.28)

- 한국기업 : (1위) 7개 품목, (2위) 10개 품목, (3위) 3개 품목
- 일본기업 : (1위) 11개 품목, (2위) 7개 품목, (3위) 16개 품목

한국 1위 품목(7개)



낸드플래시메모리



중소형 유기EL패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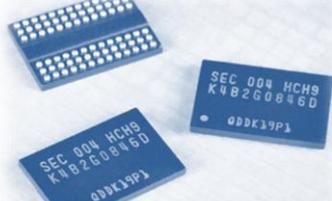
스마트폰



조선



평면TV



DRAM



대형 액정패널

일본 1위 품목(11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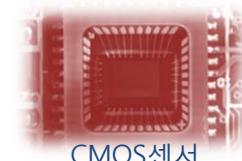
리튬이온전지용
세퍼레이터



리튬이온전지



산업용로봇



CMOS센서



탄소섬유



타이어



マイ크로컴퓨터



A3레이저복합기



렌즈교환식
카메라



중소형 액정패널



디지털
카메라

(5)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은?

- ❖ 일본,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,
세계 3대 소비시장
- ❖ **한국기업 진출이 어렵다?"**
 -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도 유독
일본시장에서는 힘을 못 쓴다.
- ❖ 일본시장은 **외국기업에 보이지 않는 장벽**을 치고 있다?
 - 누가? (정부? or 소비자?)
 - 일본경제는 내수 비중이 높다.
(자국 상품 최고주의)
- ❖ **한국기업의 무서운 성장세**에 대한 견제인가?



■ (6) 일본의 기업 문화

❖ 모노즈쿠리(장인정신) 문화

- 일본시장과 소비자는 **120%** 의 완성도를 원한다.
- 한국기업은 완성도 보다 신속과 도전정신으로 승부



❖ 스리아와세(Integral) 문화

- 제품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세밀한 **니즈와 용도에 따라 미세 조정** (長시간, 高비용)
- 한국은 표준화/모듈화 생산 (短시간, 低비용)





1

한일 경제 비교

2

일본의 AEO제도 개요

3

AEO 사업자별 혜택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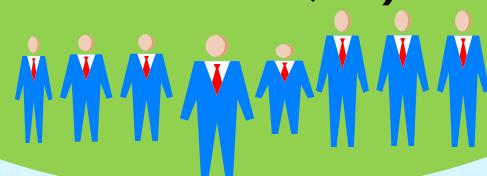
AEO 상호승인 현황

(1) AEO 조직 및 인원

재무성 관세국 업무과
AEO 인정사업자조정관(4)



도쿄세관
AEO센터(20)



9개 세관
63 명

9개 지역 본부세관



* 하코다테, 나가사키, 오키나와의 인원은 AEO 전담자가 아님

(2) AEO제도 도입 경위

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 테러 발생(미국)



수입화물 검사 강화
→ 물류 정체
→ 물류안전 확보와 무역 원활화의 양립 필요성

미국이 C-TPAT(Customs–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)를 도입(2002년 4월)



국제표준 수립

<WCO(세계관세기구) 총회>

- AEO 개요를 포함한 국제무역의 안전확보 및 원활화를 위한 ‘Safe Frame Work’ 챕터 (2005년 6월)
- 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가이드라인 챕터 (2006년 6월)
- AEO가이드라인을 포함한 ‘Safe Frame Work’ 챕터 (2007년 6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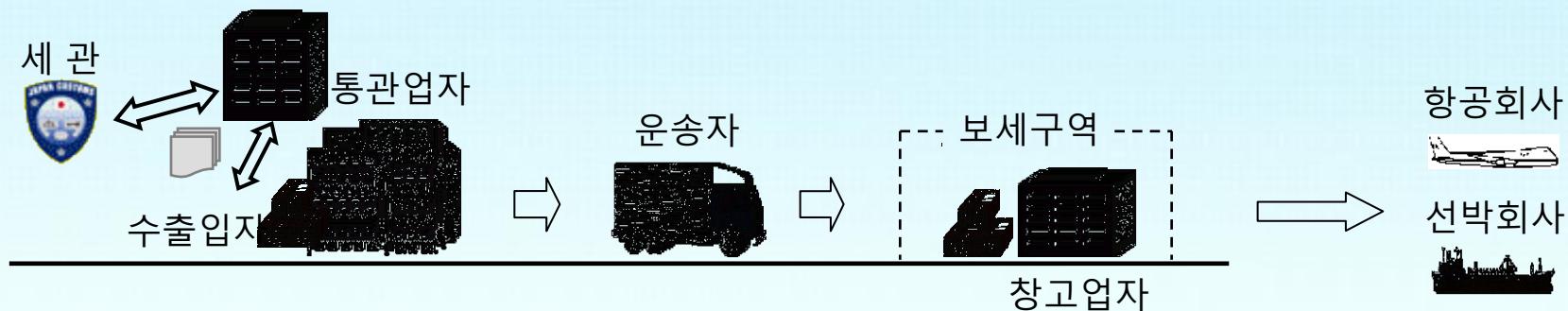
WORLD CUSTOMS ORGANIZATION
ORGANISATION MONDIALE DES DOUANES



일본(2006.3월)을 비롯 한국, 뉴질랜드, EU, 싱가포르, 캐나다 등
약 70개국이 AEO제도를 도입

(3) 일본의 AEO제도 정책 ~서플라이체인의 안전 확보~

AEO제도를 통해 서플라이체인 전체를 커버



화물의 보안 및 법규준수 체제가 정비된 AEO사업자에게는 간소화 및 신속한 세관 절차상의 완화 조치를 제공

(5) AEO 인정사업자 추이





1 한일 경제 비교

2 일본의 AEO제도 개요

3 AEO 사업자별 혜택

4 AEO 상호승인 현황

(1) AEO 사업자 혜택(개요)

화물의 보안을 포함한 법규준수 체제를 갖춘 AEO사업자에게
세관 절차상의 완화 조치 등 혜택을 제공

각 사업자에 대한 완화조치

(수입자: 특례수입신고제도)

- 화물 국내도착전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
- 수입신고시 납세 관련 신고항목 경감
- 수입신고시 서류심사·화물검사를 경감
-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
담보 제공 없이 추후 납세신고 가능

(수출자: 특정수출신고제도)

- 화물이 자사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음
- 수출신고시 서류심사·화물검사를 경감

(운송자: 특정보세운송제도)

- 보세운송건별 보세운송 승인 불필요

(창고업자: 특정보세승인제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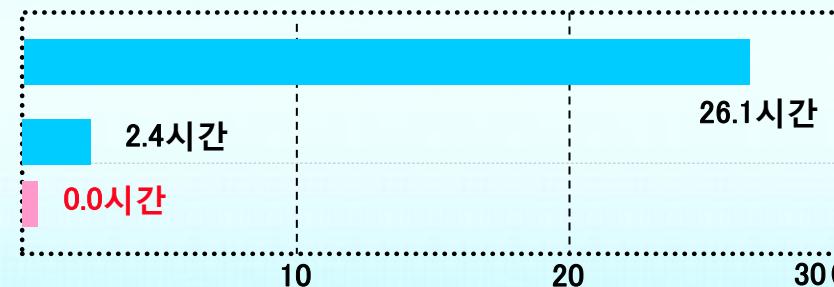
- 창고 등에 외국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세관의 허가가
불필요(세관 신고만 필요)
- 세관에 신고한 창고의 장부 보존기간을 일반 보세창고(2년) 대비
단축(1년)
- 세관에 신고한 창고 등의 보세지역 허가 수수료를 면제

(통관업자: 인증통관업자제도)

- 수입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통관절차를 시작, 또한 일정
조건 하에 수출 화물을 공장·창고 등에 둔 채로 수출허가를 받을
수 있음
-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및 납세를 추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음
- 특정 세관기관 관할구역내에 보관되어있는 화물을 미리 선택한
세관기관에 수출입신고 가능

(구체적 효과 :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 결과)

1991년 실시 일반해상화물



※ 수입신고부터 수입허가까지 소요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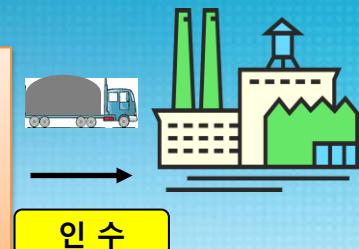
(2) AEO수입자(특례수입신고제도①)

일반수입자



입항
심사·검사
허가
인수

보세구역



AEO 수입자가 이용 가능한 제도

…본선(本船)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음.



신고 → 허가
~~심사·검사~~

입항
인수



보세구역 반입이 불필요

소요시간 단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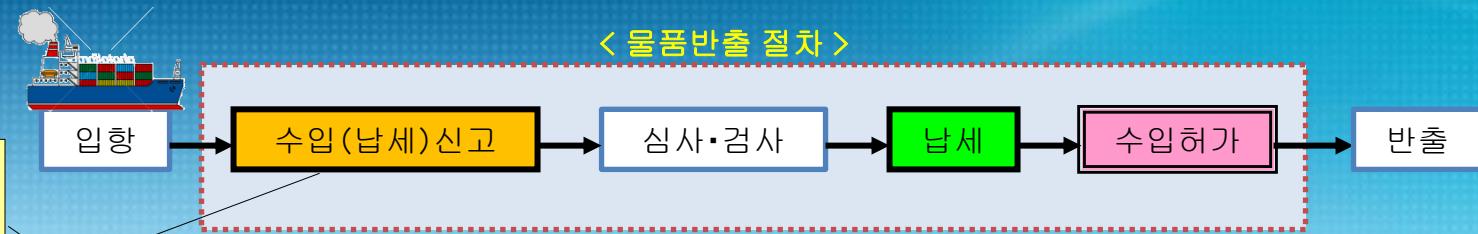
Benefit

- 세관 심사·검사가 경감됩니다!
- 본선(本船) 입항 전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!
- 보세구역 반입이 불필요해집니다!
-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!

(2) AEO수입자(특례수입신고제도②)

일반 수입신고

<납세신고 서류 제출>
 ·원산지증명서
 ·감면/면세 관련서류
 ·평가 관련서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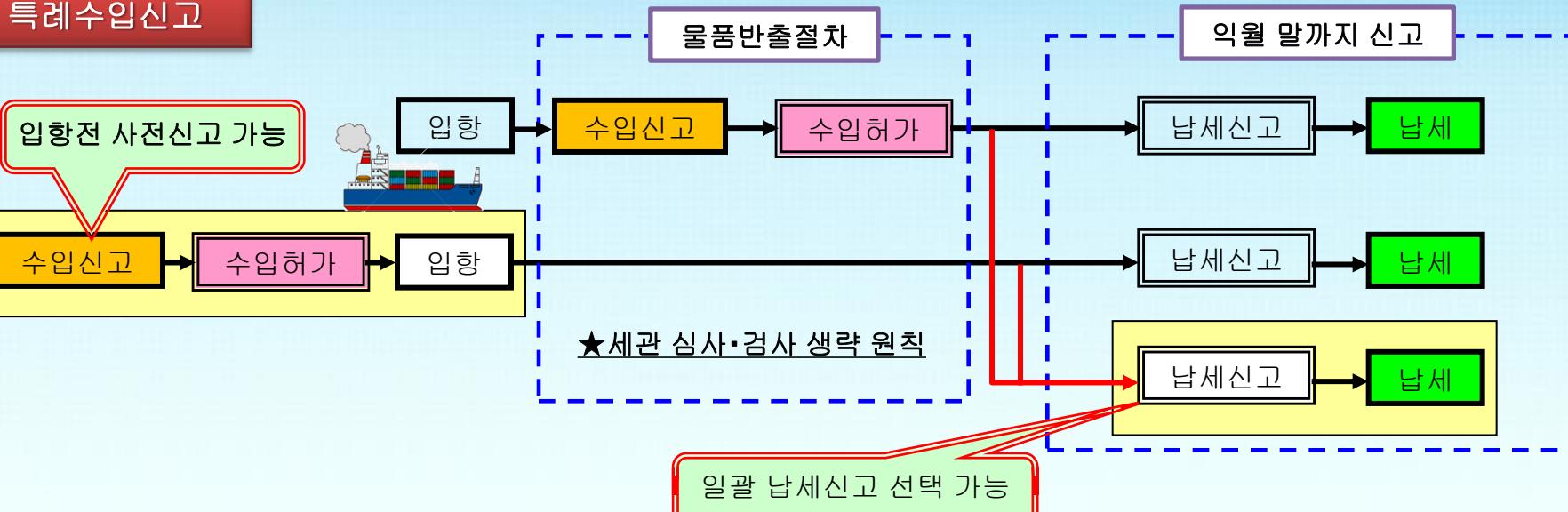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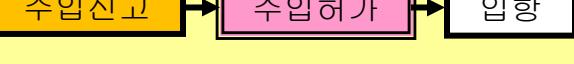


특례수입신고

입항전 사전신고 가능



수입신고 → 수입허가 → 입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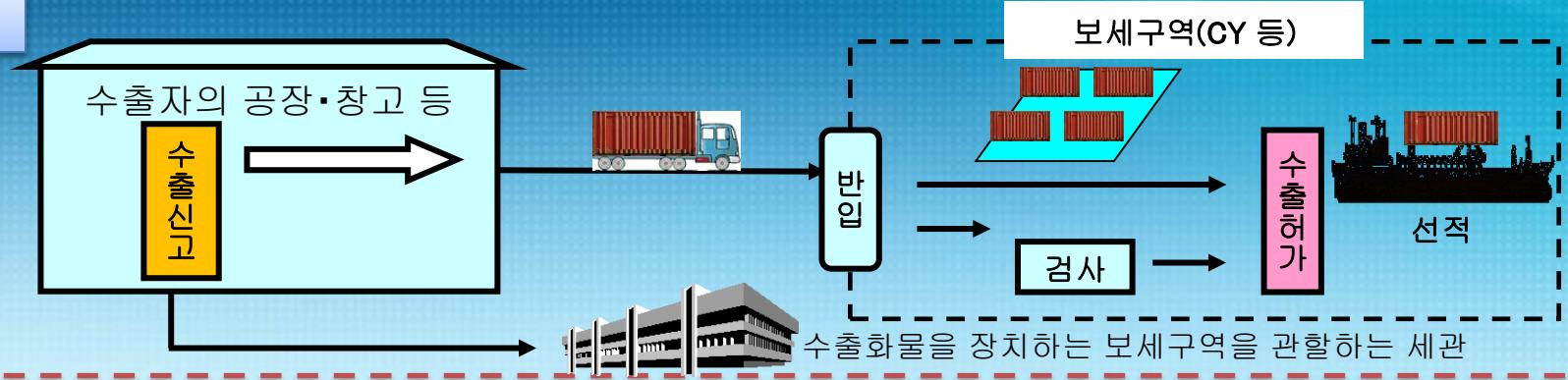


Benefi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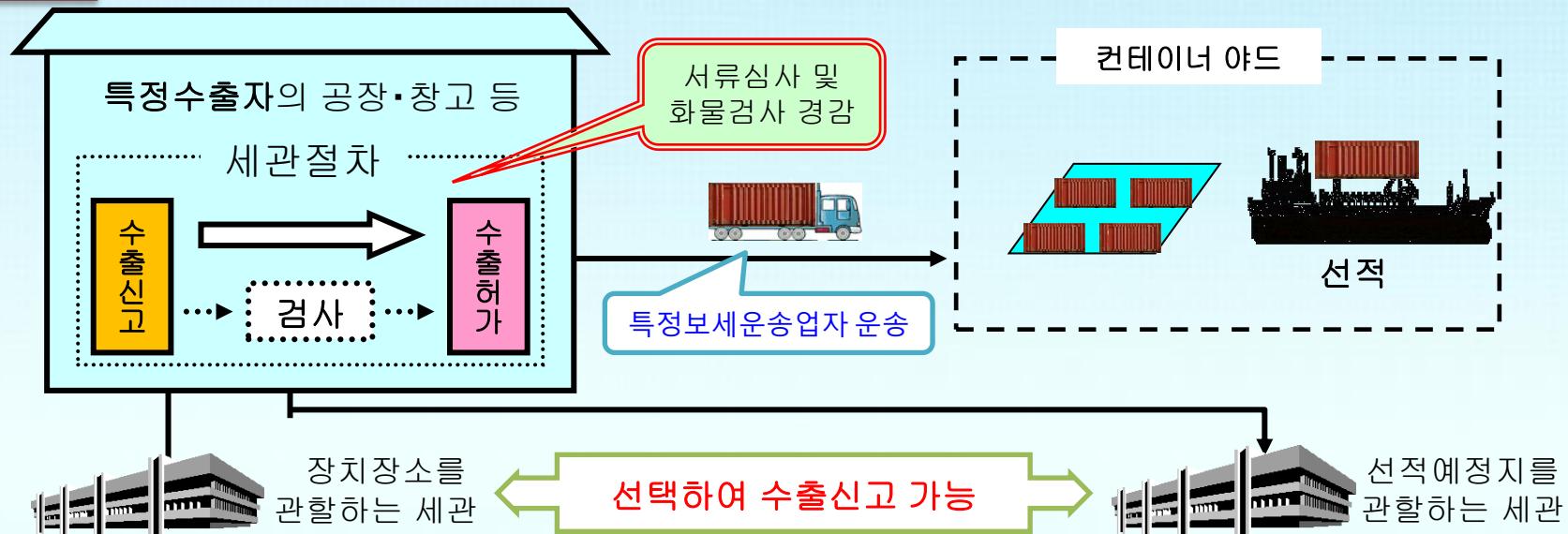
- **수입신고(물품신고)와 납세신고 절차를 분리**하여 납세 및 면세에 필요한 서류 없이 물품반출 가능 (관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제공 없이 통관)
- 납세신고는 다음달 말까지 일괄하여 신고, 정확한 납세신고 준비 가능!

(3) AEO수출자(특정수출신고제도)

일반 수출신고



특정수출신고



Benefit

-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수출신고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다!
-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또는 선적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 중 한곳에 신고할 수 있다!

(4) AEO창고업자(특정보세승인제도)

【보세허가】

〔保税藏置場〕



〔保税工場〕



【특정보세승인】

〔保税藏置場〕



〔保税工場〕



법규준수체제

(허가요건)

- 과거 3년간 관세법 등의 규정에 위반이 없을 것
- 충분한 자본과 업무수행능력이 있을 것
- 장소, 설비가 보세장치장 등으로 적당할 것
- 폭력단원 등이 아닐 것

(승인요건)

- 3년이상 계속하여 보세장치장 등의 피허가자 일것
- 과거 3년간 관세법 등의 규정에 위반이 없을 것
- 폭력단원이 아닐 것
- 법령준수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
- NACCS를 사용하는 능력 및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

(조치)

- 세관장의 허가에 의해 보세장치장을 설치
- 보세장치장 신규/갱신할 때마다 허가갱신 절차
- 허가기간 : 6년간
- 일정기간마다 화물관리 업무관련 세관의 검사
- 보세장치장 신규/갱신할 때마다 허가수수료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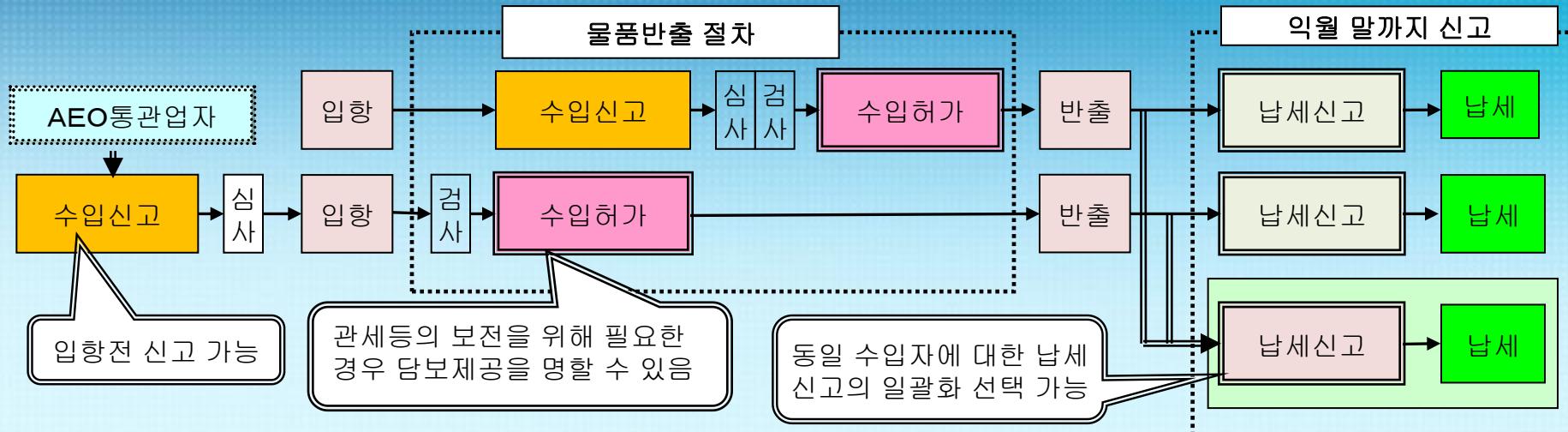
(특례조치)

- 신고에 의해 보세장치장 등을 설치
- 신규/갱신할 때마다 허가갱신 절차 불필요
- 승인기간 : 8년간 (신고기간은 승인기관과 같음)
- 법규준수도를 반영한 세관검사(사후감사)
- 보세장치장 신규/갱신할 때마다 허가수수료 면제

(4) AEO 통관업자(인정통관업자제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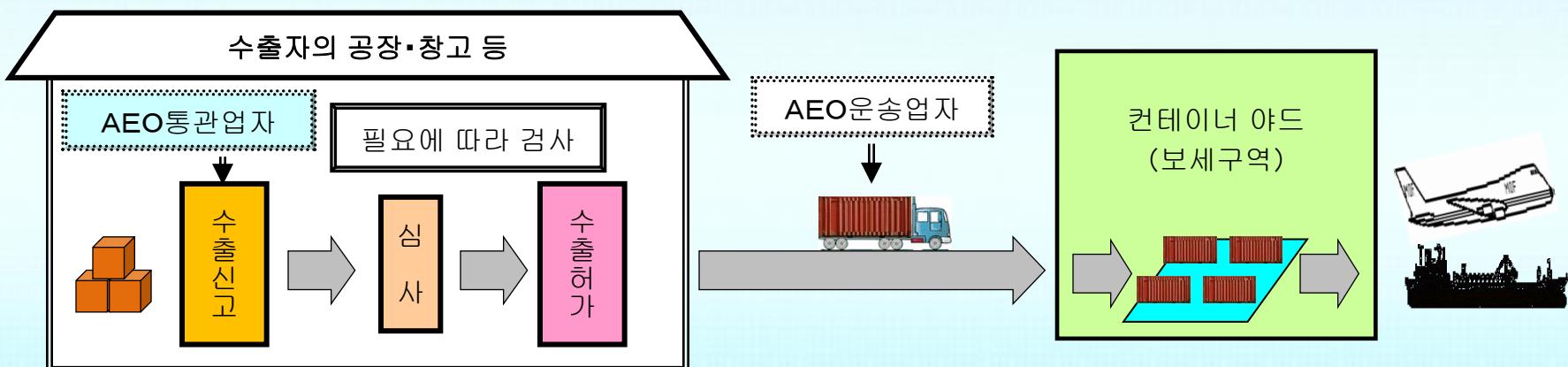
특례위탁수입신고

- AEO통관업자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경우, 입항 전 수입신고와 물품 반출 후에 일괄하여 납세신고 절차 가능



특정위탁수출신고

- AEO통관업자에 의해 적정한 화물관리가 확보되는 경우, 수출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에 수출자의 공장·창고 등에서 수출신고를 하고, 허가를 받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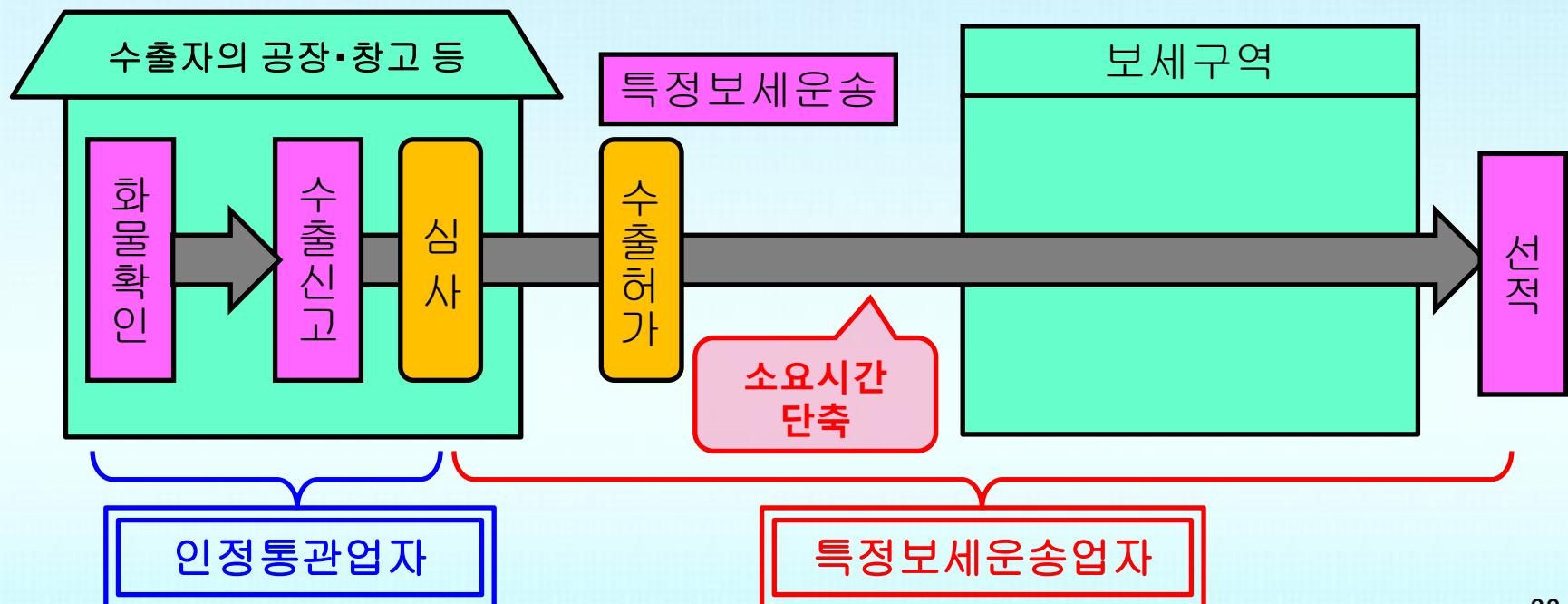


(5) AEO 보세운송업자(특정보세운송업자)

① 개개의 보세운송 승인이 불필요하므로 업무부담이 줄어든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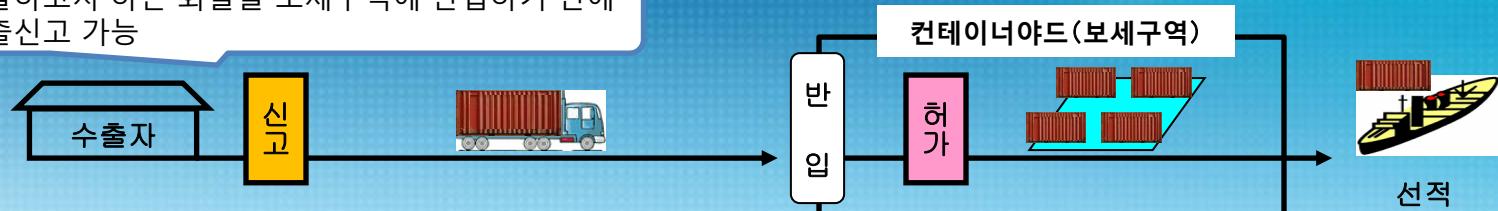
② 특정 위탁 수출신고제도의 일익을 담당하며, 수출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.



(6) AEO 제조업자(특정제조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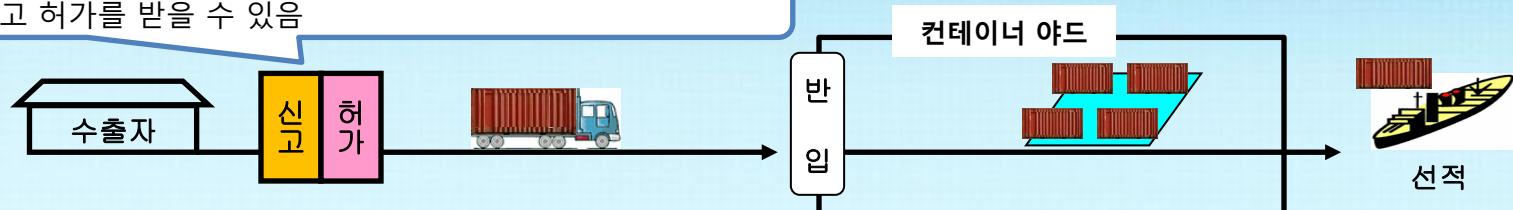
일반수출신고

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에
수출신고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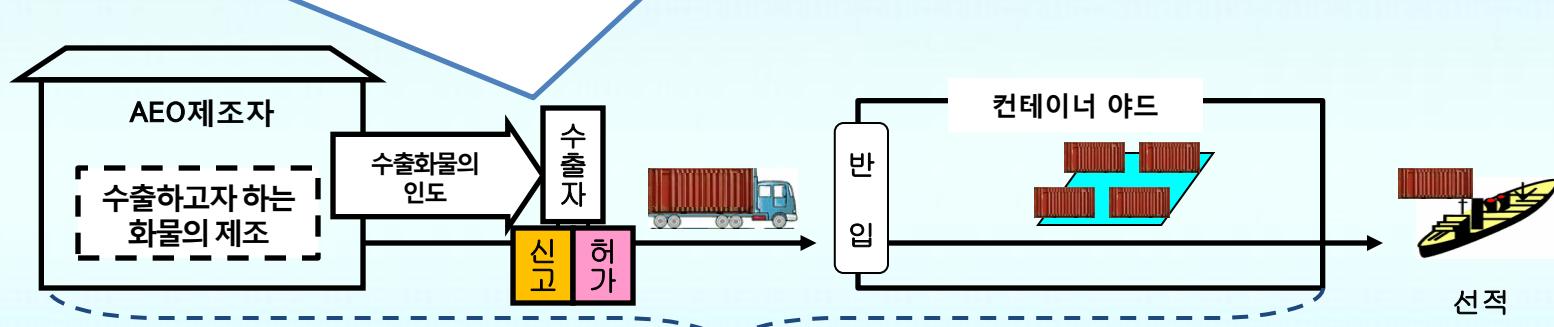
특정수출신고

AEO수출자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
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음



인정제조자제도이용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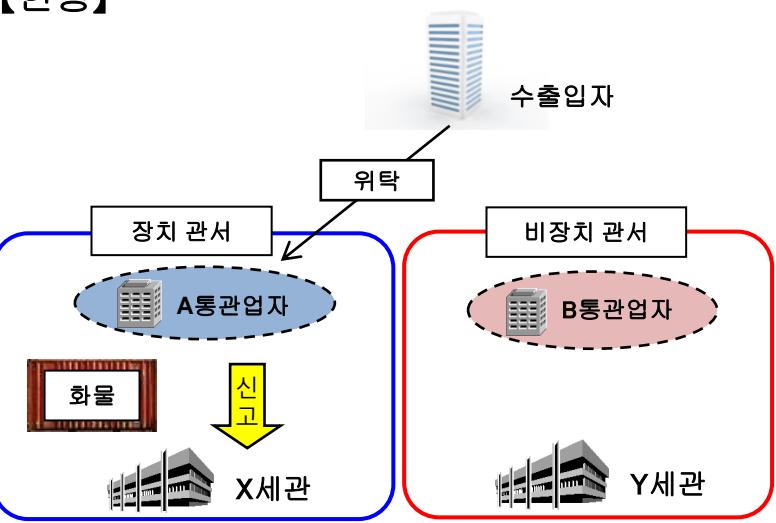
AEO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에 관해서, AEO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인도하고, 수출자와 일체가 되어 관리를 하는 것
을 전제로 수출자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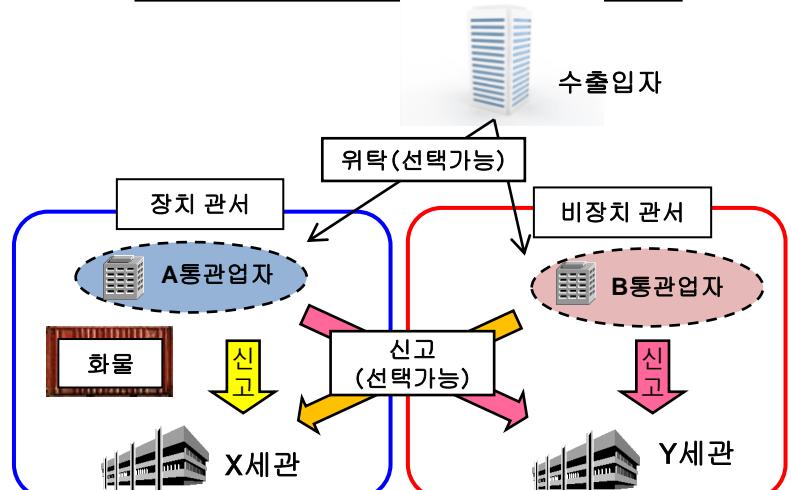
AEO제조자가 수출자와 일체가 되어 화물관리

(4) 추가적인 혜택 (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)

【현행】



【AEO사업자가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】



◆ 수출입 신고관서의 자유화(AEO수출입자, AEO통관업자)

- 화물의 수출입신고는 장치관서(화물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청)에 하는 것이 원칙
- AEO사업자(수출입자, 통관업자)에 대해서는 **화물의 장치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입 신고 허용** →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, 무역원활화에 기여

◆ 통관업 제도의 개정

- 수출입 신고관서의 자유화에 따라, **통관업 영업구역 제한 폐지** (통관업법 개정)

⇒ **2017년 10월 8일** 시행예정(관계 법률, 정령 및 성령 공포 완료)



1

한일 경제 비교

2

일본의 AEO제도 개요

3

AEO 사업자별 혜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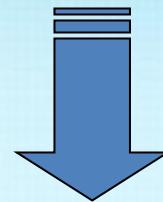
4

AEO 상호승인 현황

(1) AEO 상호승인 이란?

AEO상호승인:

AEO제도를 보유한 양국이 각각의 AEO제도 및 AEO사업자를 상호승인 함으로써, 양국간 물류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일관적으로 한 단계 높은 물류 원활화를 추진하는 것



일본 AEO사업자에 대한 AEO상호승인 효과:

- ① 자사가 관여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일본세관뿐 아니라, 상대국(예:한국)의 세관절차에서도 서류 심사·검사 부담이 경감되는 등 추가적 혜택 발생
- ② 국제적으로 AEO 기업으로서 인지됨

(2) 일본의 AEO 상호승인 현황

- 현재 일본은 한국, 미국, EU를 포함한 8개국과 상호승인 서명 (한국은 12개국)

상호승인(8개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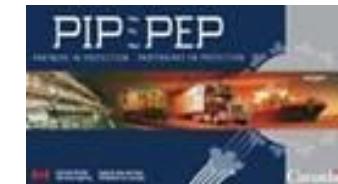
(뉴질랜드)



(미국)



(EU)



(캐나다)



(한국)



(싱가폴)



(말레이시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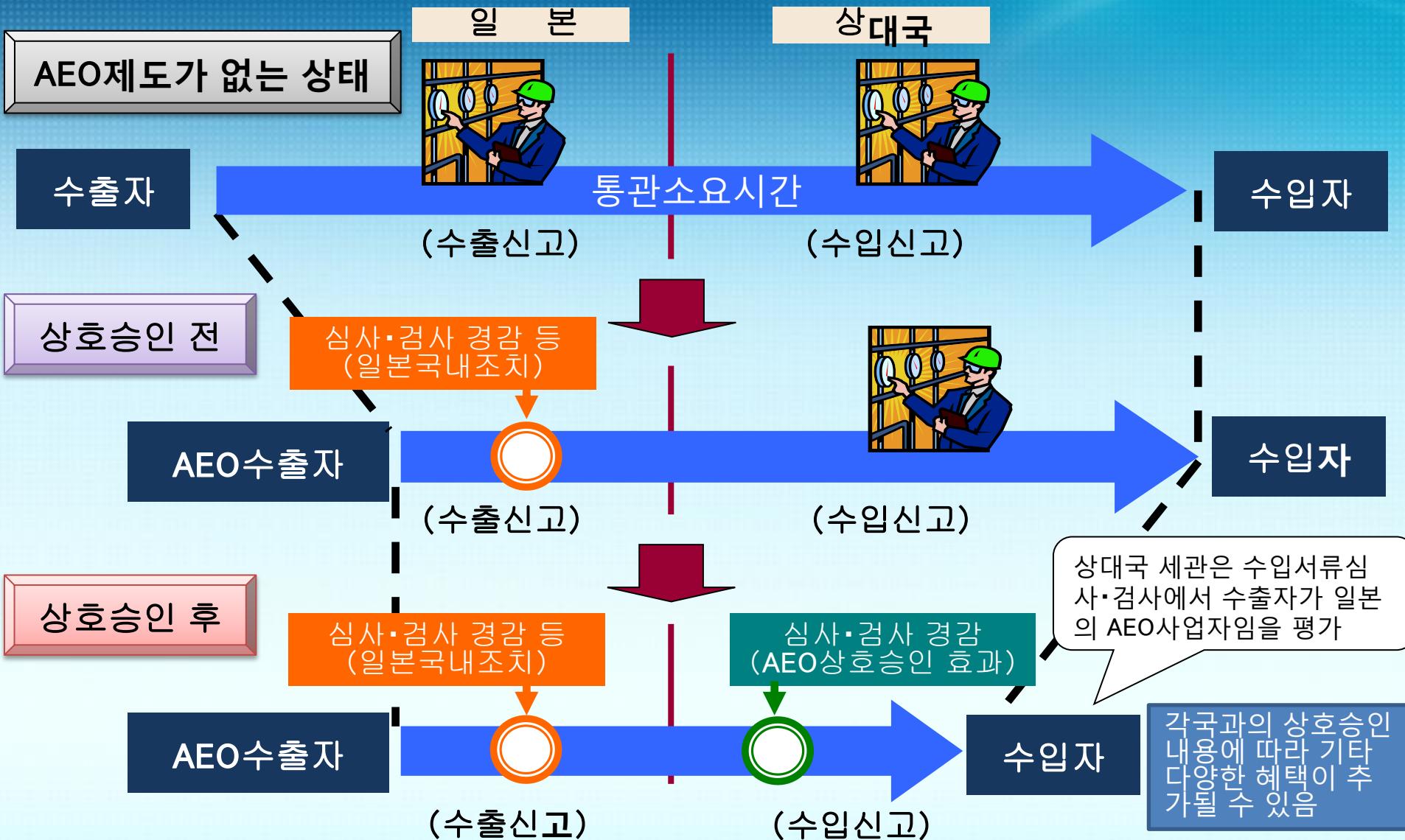


(홍콩)

협의중(4개국)

- ◆ 태국 ◆ 중국 ◆ 대만 ◆ 스위스

(3) AEO 상호승인 효과



(참고) 세관 Website (<http://www.customs.go.jp/>)

このページの本文へ [サイトマップ](#) [English](#)

税関 Japan Customs 文字サイズ + 大きく 元に戻す - 小さく サイト内検索 検索

Facilitating Global Trade
税関は、貿易の円滑化に貢献しています。

ホーム 海外旅行の手続き 輸出入の手続き 水際での取締り 貿易統計 カスタムスアンサー

■ 税関からの重要なお知らせ
[東日本大震災に伴う税関関連情報](#)

개재내용

1. AEO제도란
2. AEO제도의 메리트 등
3. AEO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
4. AEO제도와 관련 자주하는 질문
5. AEO사업자 일람
6. 최근의 주요 개정상황 등
7. 세관 문의처

<http://www.customs.go.jp/zeikan/seido/kaizen.htm>

全国の税関

函館	東京	横浜
名古屋	大阪	神戸
門司	長崎	沖縄

国際物流におけるセキュリティの確保と円滑化の両立

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JAPAN

トピックス

私は「運び屋」になってしまった。
不正薬物の大な犯罪です。

わせ先(メールアドレス)を変更しました
を行うことができる期間等が延長されます

- ▶ [税関における保税搬入原則の見直し](#)
- ▶ [平成20年6月から平成23年2月までに葉巻等を郵便で輸入された方へ](#)

감사합니다!

